경기에너지협동조합 2022년 정기총회



2022년 2월 11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2022년 정기총회 진행순서

- 정기총회
- 성원 확인
- 개회선언
- 의사록 서기 및 서명날인 인 지명
- 정기총회 안건 심의

제 1호 의안) 2021년 사업 · 결산 보고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2021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잉여금 및 출자배당 지급의 건

제 4호 의안) 임원 충원 및 보임 이사회 위임의 건

제 5호 의안) 2022년 사업 계획(안) · 예산(안)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의 건

○ 폐회

인사말

"경기도민 1가구 1발전소'를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기치를 내걸고 긴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에너지에 기초한 산업혁명을 넘어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망을 가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와 양에서 기후위기를 따라잡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의식 주 생활 전반을 바꿔야 하는 인식의 전환과 불편 감수에는 주저하곤 합니다. 텀블 러나 장바구니 이용 등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를 넘어, 공동체로 살아가 는 도시의 구조나 산업 전반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는 정치적 입장이나 기존 산업체들의 반발에 밀려 선언이나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 꿈꾸는 세상은 시민참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활용한 지역사회 에너지생태계를 구축하며, 사회적경제확대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경기지역의 29개 시민발전협동조합들과 함께 활동가 양성과 도민참여 공론장 조성, 태양광 닥터 및 부지발굴과 연계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이 상 명

- 목 차 -

0	2021년 정기총회 회의록 확인	5
0	2021년 사업보고	12
0	2021년 결산보고	27
0	2021년 감사보고	33
0	잉여금 및 출자배당 지급의 건	36
0	임원 충원 및 보임 이사회 위임의 건	38
0	2022년 사업계획	40
0	2022년 예산(안)	52
0	차입금최고한도 승인의 건	54
0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정관	56
0	조합원 명부	66

협동조합 정신

○ 협동조합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 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조직이다.

○ 협동조합의 가치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 로 한다.

○ 협동조합의 7대 운영원칙

- 1) 제 1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사업이용과 책임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개방
- 2) 제 2 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 평등한 의결권과 주체적 참여, 조합원의 조합 및 연합조직의 통제권
- 3) 제 3 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자본조달에 있어서 조합원의 공평한 부담과 자본에 대한 민주적 관리
- 공동재산, 출자배당 제한, 잉여의 내부유보, 이용고 배당, 지역사회 및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 4) 제 4 원칙: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조합원에 의한 자율,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 조합원의 정치적 신조 존중, 의견 통일하에 정치적 발언과 행동
- 5) 제 5 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직무교육, 일반대중에 대한 협동조합 정보 제공
- 6) 제 6 원칙 : 협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동종, 이종, 지역, 전국, 국제적으로 협동조합간 협동
- 7) 제 7 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 협동조합은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세계화에 대한 협동조합 측의 대응)
-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책임
-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지향

2021년 정기총회 회의록 확인

경기에너지협동조합 2021년 서면총회 회의록

1. 총회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1. 3. 30.(화) 오후 6시 30분

나. 장소 : 서면총회 (서면총회 개표 장소 : 라자로 마을 내 마을 카페)

2. 참석자

가. 총 조합원 : 72명

나. 총회 참석 조합원 : 41명(서면결의서 제출 인원)

3. 서기 및 서명인

가. 서기 : 최태량

나. 서명인 : 이슬기, 정상숙, 최태량

4. 총회 내용

- ▲ COVID-19에 따라 정부의 실내모임 자제권고 협동조합 정기총회에 따른 등기변경, 경영공시, 사업추진 차질 방지를 위해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기획재정부 2020.03.20. 지침)에 따른 2021년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다.
- 가. 양기석 의장이 18시 30분에 총회 개회선언을 하다.
- 나. 정상숙 사무국장 총 72명 조합원 중 서면결의서를 41명이 제출하였으므로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성원이 됨을 보고한 뒤 양기석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의장이 서기 추천을 묻자 최태량이 추천되었으며 총회 회의록 기명날인을 위한 3 명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다. 이슬기, 정상숙, 최태량 조합원이 추천되었고 전원 동 의하다.

1) 안건토의

- 가) 제 1호 의안 2020년 사업·재정 결산 보고
 - 2020년 사업·재정 결산을 서면으로 보고하다
 -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의결 참여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의결 결과
72	41	_	_	_	통과

- 나) 제 2호 의안 2020년 감사보고
- 2020년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하다.
-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의결 참여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의결 결과
72	72 41 -		_	_	통과

- 다) 제 3호 의안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
-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을 서면으로 보고하다.
-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의결 참여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의결 결과
72	41	_	_	_	통과

- 라) 제 4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 정관개정의 건을 서면으로 보고하다.
 -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제 2조 목적

O 변경 전

1.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O 변경 후

1.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O 변경 전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관내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O 변경 후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수 있다.

◆ 제 15조 제명

O 신규조항 추가

5. 단, 제명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고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제 18조의 2 우선출자 <신규>

O 신규조항 추가

- 1.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 2.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8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 제 29조 대의원 총회

O 변경 전

4.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O 변경 후

4.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최소 21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제 34조 총회의결사항
- O 신규조항 추가

-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 ◆ 제 36조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O 신규조항 추가

-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 ◆ 제 45조 운영위원회

O 변경 전

1.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제62조 제1항부터 제10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를 둔다.

O 변경 후

- 1.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제62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를 둔다.
- ◆ 제 47조 임원의 선임

O 신규조항 추가

- 4. 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임한다.'를 추가하다
- ◆ 제 62조 사업의 종류

O 신규조항 추가

1항의 사업의 종류에서 아래의 사업들을 추가.

11.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12.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3. 전기공사업, 14. 모든 전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 15. 건축물전기설비 공사업, 16. 건축물전원설비 공사업, 17. 가공 대전설비 공사업, 18. 지중 대전설비 공사업, 19. 공장 자동화제어 설비공사업, 20. 수배전 설비 공사업, 21. 기타 산업시설물 공사업, 2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23.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24. 금속조립구조제 개발업, 25. 금속조립구조제 도소매업, 26. 금속조립 구조제수,출입업, 27.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 28.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개발업, 29.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 30.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수출업, 31.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 32. LED 조명기구 제조업, 33. LED 조명기구 도소매업, 34. LED 조명기구 개발업, 35. LED 조명기 수

출입업, 36. 태양광 발전 장치등 제조업, 37. 태양광발전 장치등 도소매업, 38. 태양광발전 장치등 수출입업, 39. 태양광 접속 분전반 도소매업, 40. 태양광 접속 분전반 수출입업, 41. 태양광 접속 분전반 제조업, 42. 태양광 전지 구조물 제조업, 43. 태양광 전지 구조물 도소매업, 44. 태양광 전지 구조물 수출입업, 45.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업, 46.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 47. 에너지진단,에너지절약사업등에너지 관련사업, 48. 통신공사업, 49. 전기자재 및 전기부품 유통도소매업, 50.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유통 및 도소매업, 51.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업, 52.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관련사업, 53. 신재생에너지 사업, 5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55.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업, 56. 건설업, 57. 신재생에너지시설물 대여사업, 58. 환경관련사업 컨설팅, 59. 부동산임대업, 60. 나물재배, 버섯재배 등 농업, 61. 녹색건축 건설, 관리운영 사업, 62. 그린 리모델링 분야사업

- 2.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 게 시행되어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 제63조 사업의 이용 <신규조항 추가>

O 신규조항 추가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조항번호변경

- 63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64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64조 회계연도 -> 65조 회계연도
- 65조 회계 -> 66조 회계
- 66조 결산 등 -> 67조 결산등
- 67조 손실금의 보전 -> 68조 손실금의 보전
 - ◆ 제 68조 잉여금 배당 및 이월
 - -> 제 69조 잉여금 배당 및 이월 <조항번호 변경>

O 변경 전

1. 조합은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5조 및 제26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O 변경 후

1. 조합은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5조 법정적립금 및 제26조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 제27조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2-3.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번호변경

- 69조 합병과 분할 -> 70조 합병과 분할
- 70조 해산 -> 71조 해산
- 71조 회계 -> 72조 청산인
 - ◆ 제 72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 제 73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항번호 변경>

O 변경 전

1.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2.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O 변경 후

- 1.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 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 2,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로 수정하다.
- ◆ 부칙 제 1조 시행일

O 변경 전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O 변경 후

- 이 정관은 수원시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의결 참여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의결 결과
72	41	_	_	_	통과

마) 제 5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현재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선출의 건을 서면으로 보고하다.
- 이사후보로 고재경, 박희경, 신동한, 안명균, 양기석, 양정필, 이상명, 이창수, 최태량, 감사후보로 박준배, 이치선이 지원하다.
- 이사장 후보로 이상명이 지원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하고 이사후보에 대한 서면동의 여부를 확인하다
-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의결 참여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의결 결과
72	40	_	_	1	통과

바) 제 6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안)·예산(안) 승인의 건

- 2021년 사업계획(안)·예산(안)을 서면으로 보고하다.
-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의결 참여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의결 결과
72	41	_	_	_	통과

사)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의 건

-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의 건을 서면으로 보고하다.
-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의결 참여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의결 결과
72	41	_	_	_	통과

마. 의장이 2021년 정기총회 3월 30일 20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3월 30일

제 1호 의안 2021년 사업·결산보고 승인의 건

의결주문 : 정관 제 34조 5항에 의거하여 시행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2021년 사업보고

■ 설립 목표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를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
- 에너지협동조합의 사업 및 활동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 관리 활성화.
- 에너지자립률 상승과 에너지 정의 실현 기반 구축

■ 2021년 목표

- 1. 지역 신규협동조합 설립(7개소) 및 사업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 2.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제안
- 3.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사업다각화 협력사업 진행
- 4. 경기도민햇빛발전소 3개소(300kW) 신규건립 및 시민참여형 발전소 건립 연대
- 5.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확충과 사무국 역량강화

■ 2021년 목표 대비 평가

○ 2021년 총괄평가

- 2021년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2050 탄소중립'약속과 함께 2030 NDC를 제출하며 실행방안을 찾느라 분주한 한 해였다. 경기지역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경기도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수립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확대를 통한 민간과 시·군 지역의 에너지전환 촉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지역 협동조합들과 정보소통 및 토론회 개최, 교육 및 상담 활동 등을 통해협동조합 및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추진해왔다.
-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2020년에 이어 한 해 동안 지속되었고, 경기지역내 공동의집에너지협동조합,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수동자연에너지협동조합,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화성그린에너지협동조합 창립과 온라인 (줌)을 활용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활동 네트워크를 지원해 회원 협동조합들이 사업을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도왔다.
-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오던 도민햇빛발전소 1호기를(100kW, 부천, 대부도협동조합 포함할 경우 도민발전소 1~3호기로 총 300kW)를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완공해 회원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고, 12월 8일 준공식을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아트센터와 함께 개최하였다. 아울러 도민햇빛발전소 4호기(100kW)를 의왕시 내손체육공원 주차장 옥상에 설치를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21년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사업은 수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영동)로의 사무실 이전과 함께 사무국장 이외에 회계분야 실무자를 채용해 사무국 체계를 갖출수 있었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통한 사회적 목적구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 경기도(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위탁으로 진행된 그린뉴딜 인력양성사업,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경기지역내 에너지협동조합들과 함께 진행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는 경기지역내 인력양성 및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었다.

- 그린뉴딜 인력양성 교육 참가자 : 2,119명
-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 참가 협동조합 수 : 20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 활동가 참가자 수 : 140명
- 신재생에너지설비기능사 자격 취득자 수 : 16명

1. 지역 신규협동조합설립 및 활성화 지원

1) 2021년 협동조합설립 및 추진지원

- 신규설립(6개소)
- 공동의집에너지협동조합
-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 수원에너지협동조합
- 수동자연에너지협동조합
-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 화성그린에너지협동조합

■ 추진위 구성

- 하남시(창립총회 진행 2022년 1월 22일)
- 평택시(추진위원회 구성)

■ 협동조합 추진관련 평가

-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뿐만아니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창업 육성사업과 함께 협력하여 경기도 내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 또 2021년에는 이미 설립된 협동조합 이외에 다른 협동조합도 설립되어 기존 협동조합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 내 에너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그린뉴딜 인력양성 교육사업(도민 에너지프로슈머 양성교육 사업)

- 경기도 지역에너지 전환과 시민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업과 연계

□ 내용 및 결과

- 최종교육 77회 진행, 교육 참여 2,119명 참여

□ 사업대상

	주제	프로젝트명	사업대상	추진 활동	목표량(성과지표)
	<그린> 녹색에너지 소비자	에너지프로 슈머 시민 교육	-경기도민 (31개 시· 군민) -시민단체, 마을주민, 학교 등	31개 시·군(민) 에너지전환 교육 (시민단체, 마을, 학교 등) 녹색전환 활동가 양성	·교육생수 200명 ·교육(2시간) 15회 ·교육동영상·유튜브 업로드 2건 ·홍보용컨텐츠 제작 3건 ·에너지전환 활동가 전문강사양성 15
그린뉴딜 인력양성 교육 (경기도민 에너지 프로슈머 양성교육)	소비자 (컨슈머)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에 너 지 프 로슈머 녹 색 전 환 활 동	-지역(마을), -주제별모 등 (예: 조례, 지역에너지 계획, 전기 요금체계 등)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마을 공동체 교육 및 활동 ·에너지전환(절약+효율화+생 산) 활동 ·에너지 자립마을(단독주택) ·스마트에너지아파트(공동주택) -에너지전환 활성화 토대 마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원 모색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바이오에너지 등)	·공모사업 신청 2건 ·에너지 관련 조례 재(개)정 1건
	<뉴딜> 녹색에너지 생산자 (프로듀서) 분산형 에너지전환 플랫폼으로서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등대 협 동조 합	시민단체, 마을모임, 사회적경제 조직 등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시민발전소,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단계별 지원	·협동조합 설립 5개 ·교육생수 60명 ·교육횟수(2H) 5회 ·협동조합 네트워킹 발전소 설치 1,000kW(온실가 스 연540톤 감축) ·에너지의 날 캠페 인 1회

			-경기도 Energy 지도 그리기 ·우리마을 에너지원을 찾아서 ·재생에너지 부지 찾기 (경기도 · 시군 · 개인 소유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가능 부지 발굴 1건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 및 협력	Energy 다 모여	경기도청, 경기연구원, 경기도에너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에너지협동조합	-도내 에너지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에너지전환 사업 다각화와 공동 사업 발굴 -총괄워크숍	도 전체 간담회 1회, 지역 간담회 1회

□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사업목표	추진실적	비고 (실행률)
1	에너지프로슈머 시민교육	 교육생수 200명 교육(2시간) 15회 교육동영상·유튜브 업로드 2건 홍보용컨텐츠 제작 3건 에너지전환 활동가 전문강사양성 15명 	 교육생수 648명 교육(2시간) 40회 교육동영상·유튜브 업로드 12건 홍보용컨텐츠 제작 2건 에너지전환 활동가 전문강사양성 15명 총괄워크숍 교육 2회, 토론회 	3.24 2.67 6 0.67 1
2	에너지프로슈머 녹색전환활동	 공모사업 신청 2건 에너지 관련 조례 재(개)정 1건 	 공모사업 신청 0건 에너지 관련 조례 표준(안) 2건 시군-재(개)정 추진 중 지역에너지계획 모니터링(28개시군) 교육 11회, 교육생 644명 간담회 2회, 공청회 1회 총참여자 107명 캠페인 1회, 총참여자 113명 	0 2 + + +
3	에너자등대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5개 교육생수 60명 교육횟수(2H) 5회 협동조합 네트워킹 (발전소 설치1,000kW-온실가스 연540톤 감축) 에너지의 날 캠페인 1회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가능 부지 발굴 1건 	 협동조합 설립 6개 교육생수 532명 교육횟수(2H) 17회 협동조합 네트워킹 (발전소 설치1,900kW-온실가스 연1,026톤 감축) 탄소공감의 날 1회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가능 부지 발굴 33건 컨설팅 10건 	1.2 8.87 3.4 1.9 1 33

□ 사업추진현황

세브	부 추진 계획		세부 추진 실적
프로젝	사업내용	단위사업	세부추진내용
<u>E</u>		안산원곡고 (뉴그린에너 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재생에너지 관심을 과학원리를 접목한 조작활동으로 배워가고 미래직업을 설계해본다교육:적정기술, 게임, 영화로 만나는 조작활동과 강좌 14강 총교육생 182명
		에너지강사역 량강화	활동가 대상으로 강의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역량을 겸비한 인력풀을 마련하고자 함교육:강의기법 과정 3강 -향후과제:전문역량 강화 및 강사역량 심화과정 총교육생 45명
	- 31개 시군 시민교육 ·도민 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한 에너지	영상제작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의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쉽고 짧고 흥미를 유발하는 영상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함. -1차 '에너지와 우리 사이의 거리' -2차 '마지막 온도, 1.5°C' -3편에서 2편 제작으로 바뀐 이유: 영상촬영비 상승
시민교육	전환 교육 진행 및 녹 색전환 활동가 양성	시·군 시민교육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주민 수용성 제고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의정부 '환경교육강사 양성과정'(총5강, 총교육생 54명) -포천 '정의로운 전환'(총5강, 총교육생130명, 협동조합추진) -하남 '에너지자립 하남도 할 수 있다.'(총6강, 현장탐방, 협동조합설립, 총교육생120명) -화성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이 답이다'(총5강, 강의역량강화, 총교육생 66명) 총교육생 370명
		총괄워크숍	2021년을 돌아보고 2022년을 설계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그린뉴딜 정 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고자 함. -교육 1강, 사업보고, 2022년 사업, 조례(안) 공유, 사업제안 총참가자 51명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교육 및 활동 ·에너지전환 활성화 토 대 마련(정책 및 조례 관련)	신재생에너지 원 집중탐구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슈중심으로 살핌, 이를 통해 '경기도에너지원부지발굴공모대회' 참여하는 계기를 통해 지역(마을)의에너지원을 탐색하고 에너지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계기를 만듦교육: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목재),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공단, 활동가), 에너지와공간(통합), 현장탐방(에너지와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총6강, 총교육생 343명
환		신재생에너지 원 현장탐방	신재생에너지원 이론 교육의 마지막단계로 여러 재생에너지원과 생태계가 어우러진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마을)의 적용하고자 함. -장소: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생태적전환, 현장설명 총2강, 총탐방자 33명
			양평군민 대상,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전환에 참여를 촉진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장소:양평생활문화센터 -내용:RE100인증, 시민사회단체 18개 기관 부스 참여

			++1_1_1 440=1
			총참가자 113명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언소동합에너지신환 설행력을 높이기 위한 동간시면소식 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민관의 역할과 과제
		양평간담회	
			-발제:여주&당진 사례, 에너지기본조례(안)
			-토론(양평군,여주시,당진시,경기도 단위) 총참가자 48명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전기요금체계를 진단하고
		전기요금사회	공감대형성으로 사회적대화를 준비하는 과정
		적대화(수원)	
			-시민대화:소모임 6곳, 워크숍(발제1,토의) 총참가자 101명에 기사
		조례	-OOO시 에너지기본 조례 표준(안)
		제(개)정	-경기도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 기본 조례(안) 총참여자 59명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역량강화와 시군 모니터링
			-대상: 도민추진단 & 활동가
		지역에너지계	
		획도민추진단	
		,—, , , , , , ,	경기도-시군 공통사업, 시군별 제안사업, 공동체 에너지생산
			총참여자 167명
			공모신청이 0건인 이유 :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사업 자체가 없어짐.
			-에너지자립마을 공모는 본 사업 예산이 나온 시점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경기도청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쉬운 예임.
			-이 사업은 따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에너지원 다각화와 부지를 발굴하여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ما اعلاما	지역(마을) 단위 에너지공동체를 추진하고자 함.
	-협동조합 지원 및 설립 ·시민발전소, 에너지	" ' ' - '	
			-공모신청 : 34개소(우수상-3개소, 아이디어상-11개소)
			-신청서 대상 부지 및 에너지원 차기년도 사업으로 부지 적정성
			및 사업화를 위한 지역과 유관기관의 공동협력이 필요
	협동조합 등 설립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협동조합을
	1 0	협동조합	구성해간다.
햇빛등대	및 단계별 지원	추진 시군	-수동: 5강, 총교육생 139명, 협동조합 설립
	-재생에너지발전소	시민교육	-화도: 6강, 총교육생 216명, 협동조합 설립
현동조합	설치 가능 부지 발		-평택: 1강, 총교육생 13명 총교육생 365명
	굴	에너지협동조	협동조합 운영 및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지원함.
	·재생에너지(태양광		추후 대면 실습이 필요한 교육임.
	등) 발전소 설치 가능	강화 교육	-교육: 교육 및 홍보, 운영 및 실무, 총무 및 회계, 발전사업(2강)
	부지 발굴하고 데이	0-1	전력거래(총 6강) 총교육생 174명
	터화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지원으로
		컨설팅	협동조합 100개 추진
			-천주교수원교구(설립 관련2회), 안성햇빛(발전소설치관련 3회),
			남양주(화도)(설립관련 4회), 평택(설립관련 교육-13명)

		총참가자 58명
		민·관의 협력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	L a Dollar	홍보부스를 통해 도민 수용성을 높임.
선	탄소공감의날	-부스운영(태양광DIY-17명 참가, 탄소중립 인식 조사-53명)
		적극참가자 70명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연대를 견고히하여 재생에너지
재	생에너지보	확산에 상호 지원하고 협력함.
	급 및 확산	-천주교수원교구(166.4kW), 부천(100kW), 대부도(100kW),
		수원(938kW), 광명(100kW), 고양(500kW) 총1,900kW

1.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사회적 효과

- 교육 및 활동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경기도민 수용성 제고
- 시·군 신청단체의 필요에 따른 설계로 사업추진력을 높일 수 있었음.
- 급변하는 국외·국내 정책 변화에 대처하는 토대마련(조례 제(개)정 등)
- 지역에너지계획 실행과정 모니터링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연계 중요 함을 인식하여, 향후 시군 수립에 있어서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임.
- 경기도 에너지원 및 부지 발굴로 지역 자원에 대한 관심과 협력하는 기관 들과 협력하는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갈 수 있음.
-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 원칙과 목표를 지키는 시민 참여 협동조합 지향으로 에너지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경기도 내 협동조합과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틀을 갖추어 가고 있음.

2.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 사업 예산과 기간에 비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음.
- 여러 단위사업을 짧은 기간 동시 진행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어려웠음.
- 교육과 협동조합, 정책과 조례 제(개)정, 실행력을 갖추는 지역에너지계획 도민추진단 워크숍과 모니터링, 협동조합 실무자 역량강화, 공모에 대한 관 심과 지식을 높이는 신재생에너지원 교육은 특히 의미가 있는 교육과 활동 이었음.
- 31개 시군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산이 더 확충될 필요가 있음.
- 건강한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을 잘 구성해가고 있고 협동조합 내 네트워크가 더 내실을 다져가고 있음.
- 경기도 민·관 상호 협력의 사업 설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3)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7월 ~ 12월

- 지역 및 대상 : 경기도 전역

- 지방보조금 : 5억원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계 조성으로 자립역량 강화

- 협동조합 활성화와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찾아가는 시설점검과 교육으로 사후관리 및 소유자 일상점검 능력배양

■ 사업목표 달성 추진실적

	사업목표	추진실적	비고
1	협동조합 설립	6	하남 추진위 진행 중
2	생태계자문회의	1회	
3	수행인력 및 전문기술 인력양성 컨설턴트 교육	5호	
4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인력확보	16명	
5	수행인력 및 전문기술 인력양성 컨설턴트 교육수료	140명	
6	설립 및 운영자문	10ই	
7	토론회 및 포럼	2회	
8	경기도네트워크회의	5회	
9	시설점검	2,664개	

□ 사업성과

-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 신뢰성 구축 및 활동기반 마련
-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신규사업 개발 및 활성화
- 지역 내 에너지활동주체로서 에너지협동조합 참여
- 발전시설 점검을 통한 발전데이터 확보
- 사용자 교육을 통한 일상점검 능력 확보

□ 세부사업추진현황

	북부권역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연천반딧불이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사업참여	남부권역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그린에너지협동조합
협동조합	서부권역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 대부도협동조합
	동부권역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양평에너지협동조합, 용인에너지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사업세부내용
경기도시민발전 협동조합 네트워크활성화	사업내용	 ○ 경기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19년 경기도 내 시민참여형에너지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성 - 공동사업개발 및 조합 간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연대활동 진행
	사업성과	- 경기도 내 공공부지 임대(4개소) - 총 800kW발전소 건립 진행 - 조합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사업내용	 ● 에너지협동조합 사업다각화 논의 -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와 함께 공동진행 - 에너지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 및 세미나 진행
	사업성과	- 지역 내 협동조합과 사업논의를 통한 정책 및 사업제안 - 시장변화에 따른 조합에 대응 논의
찾아가는	사업내용	● 태양광닥터사업 참여 활동가 및 기술자 실무교육 - 1, 2차 실무교육 진행 및 참여 - 3차례 기능사 자격 획득 교육 진행 및 참여 - 2차례 중간 점검 및 최종 회의 진행
태양광 인력교육	사업성과	- 활동가, 기술자, 사업지원 인력 사업이해도 상승 - 실무 및 기술점검,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참여인력 인력 역량 강화 - 인력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너지협동조합 운영활성화

찾아가는 태양광 시설 및 사후점검	사업내용	○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점검 및 찾아가는 태양광 교육 - 20kW미만 태양광발전설비 점검을 통한 운영 이상유 무 확인 - 사용자 교육을 통한 일상점검 능력 배양 - 지역에너지협동조합 홍보 및 지역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사업성과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 신뢰성 구축 및 활동기반 마련점검과 교육을 통해 사용자들의 일상점검능력 강화발전시설 점검으로 발전 이상유무 확인

활동사진





RPS 제도개선 세미나



총괄워크숍



기능사 시험 준비 교육



기능사 시험 준비 교육



점검사진

점검사진

2. 발전소 운영 및 건립사업

□ 도민발전소 건립 사업

- 도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 (100kW)
- 2021년 12월 8일 준공식 진행





준공식 행사 사진

발전소 전경

- 현재 발전설비확인 신청 완료.
 - 발전현황

: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호기 발전량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전량(kWh)	•••	•••	•••	•••	2084.6	7085.3
발전 시간	•••	•••	•••	•••	2.08	2.28

- 도민햇빛발전소 4호기 건립 (100kW)
 - 진행현황
 - : 의왕시 내손체육공원 주차장 옥상 설치 예정
 - : 2월 말까지 완공하여 전력판매계약 진행 예정

3.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확충, 사무국 역량 강화 사업

- 회의체계 정례화 및 사업 집행력 강화
 - 이사회 격월 운영, 운영위원회 매월 운영 정례화
 -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회의로 조합 운영에 필요한 논의 진행

■ 2021년 조합원 100명 확대 완료

- 도민주민참여형 햇빛발전소 1호기 추진에 맞춰 조합원 확대 진행
- 총 조합원 112명 모집 완료(2021년 12월 31일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지역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4.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활동

■ 이사회 활동

	일 시	임원	참석	논 의 안 건
1	2021. 1. 27(수)	11	8	- 1호기 건립 - 총회준비(정관수정, 이사 보선) - 선거관리 규정 및 위원회구성
2	2021. 2. 23(화)	11	9	- 총회준비 - 사업 관련 준비 및 논의
3	2021. 3. 15(월)	11	8	- 총회 안건승인
4	2021. 5. 11(화)	11	5	- 1호기 건립 - 사업 관련 논의 - 조합 등기 변경
5	2021. 7. 13(화)	11	9	- 발전소 건립현황 보고 - 조합 사업 현황 논의
6	2021. 9. 14(화)	11	8	- 발전소 건립현황보고 - 사업 진행사항 보고 - 발전소 추가건설관련 논의 - 탄소공감 행사 논의
7	2021. 11. 9(화)	11	9	- 발전소 건립현황 보고 - 한국형 FIT 대응논의 - 사회적기업 신청관련 논의
8	2021. 12. 21(화)	11	8	- 2호기 건립관련 논의 - 총회 준비

■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활동

: 이사회 지원 및 운영과 관련 회의필요시 상시 진행

	일 시	회의 단위	논 의 내 용
1	2021. 2. 19(금)	운영위원회	- 2021년 사업관련 논의 - 발전소 상황공유
2	2021. 5. 4(화)	운영위원회	- 2021년 공모사업 관련 논의 - 발전소 상황공유
3	2021. 6. 2(수)	운영위원회	- 2021년 공모사업 관련 논의 - 발전소 상황공유
4	2021. 6. 18(금)	운영위원회	- 생태계조성사업 계획검토 - 그린뉴딜교육사업 계획검토
5	2021. 7. 27(월)	사무국 회의	- 공모사업, 발전소 현황 공유 - 기후에너지의 날 운영 계획 논의
6	2021.8.10.(월)	- 공모사업, 발전소 현황 공 - 경기도민 4호기 공모선정, 8.10.(월) 사무국 회의 - 제작 홍보물(영상) 의견 공 - 사무실 이전등 논의 - 1호기 대출 진행	
7	2021.9.29.(수)	사무국 회의	- 공모사업, 발전소 현황 공유 - 1호 발전소 현장방문 일정 협의 - 직원 역량강화관련 논의
8	2021.10.12.(화)	사무국 회의	- 공모사업, 발전소 현황 공유 -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논의 - 태양광닥터 모니터링 작업 진행 - 에너지원 워크숍 진행 논의
9	2021.11.4.(목)	사무국 회의	- 공모사업, 발전소 현황 공유 - 태양광닥터 중간결과 회의 공유 -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논의
10	2021.11.16.(화)	사무국 회의	- 공모사업, 발전소 현황 공유 -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논의 - 그린뉴딜, 생태계조성 총괄워크숍 계획 논의

2021년 결산보고

재 무 상 태 표

제 4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3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71. 12	제 4(당)기	제 3(전)기
과 목	금	액	音	액
자 산				
I.유 동 자 산		101,576,113		112,525,099
(1)당 좌 자 산		101,576,113		112,525,099
보 통 예 금		81,293,450		100,398,622
미 수 금		20,282,663		8,030,352
선 급 금		0		4,096,125
(2)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146, 198, 310		100,000
(1)투 자 자 산		100,000		100,000
출 자 금		100,000		100,000
(2)유 형 자 산		145,098,310		0
구 축 물	136,537,500			
감 가 상 각 누계액	1,137,812	135,399,688		
건 설 중 인 자 산		9,698,622		0
(3)무 형 자 산		0		0
(4)기 타 비 유 동 자 산		1,000,000		0
임차 보증금		1,000,000		0
자 산 총 계		247,774,423		112,625,099
부				
1.유 동 부 채		53,709,659		95,283,430
외 상 매 입 금		10,668,484		0
미지급금		4,122,370		0
예 수 금		35,214,740		72,990
미지급비용		14,665		440
미지급법인세		3,689,400		0
투 자 예 수 금 국 고 예 수 금		0		50,000,000
		0		45,210,000
Ⅱ .비 유 동 부 채 장 기 차 입 금		104,070,000 54,070,000		0
장 기 차 입 금 조 합 원 차 입 금				0
도 합 전 사 립 금 부 채 총 계		50,000,000		95,283,430
구 새 용 게 - 자 본		157,779,659		90,405,430
		43,500,000		10,300,000
I.사 본 금 출 자 금		43,500,000		10,300,000
□ □ □ □ □ □ □ □ □ □ □ □ □ □ □ □ □ □ □		43,500,000		10,300,000 0
Ⅲ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0		0
V .이 익 잉 여 금		46,494,764		7,041,669
미 처 분이익잉여금		46,494,764		7,041,669
(당 기 순 이 익)		10,101,101		7,011,000

재 무 상 태 표

제 4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3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제 모	제 4(당)기	제3(전)기	
과 목 -	금 액	금 액	
당기 : 39,453,095 원			
전기 : 880,120 원			
자 본 총 계	89,994,764	17,341,669	
부 채 및 자 본 총계	247,774,423	112,625,099	

손 익 계 산 서

제 4(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외사영 : 경기에 디자밥 중조밥	제4(5	당)기	제3(전	(인기 · 전) 전)기
과 목	音	액	금	액
1. 매 출 액		0		0
Ⅱ.매 출 원 가		0		0
Ⅲ. 매 출 총 이 익		0		0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531,248,251		15,833,265
직 원 급 여	127,611,510		14,700,000	
복 리 후 생 비	4,794,860		166,000	
여 비 교 통 비	4,853,000		0	
통 신 비	876,125		0	
세 금 과 공 과 금	10,330,780		714,520	
감 가 상 각 비	1,137,812		0	
보 험 료	2,901,440		120,560	
운 반 비	195,000		0	
도 서 인 쇄 비	14,560,881		0	
사 무 용 품 비	2,294,946		0	
소 모 품 비	11,012,326		0	
지 급 수 수 료	31,479,128		132,185	
광 고 선 전 비	10,005,453		0	
건 물 관 리 비	1,978,070		0	
외 주 용 역 비	307,216,920		0	
V. 영 업 손 실		531,248,251		15,833,265
VI. 영 업 외 수 익		574,677,436		17,408,105
이 자 수 익	269,673		18,525	
일 자 리 안 정자금	968,490		580,000	
후 원 금	12,339,245		16,809,580	
국 고 보 조 금	561,100,000		0	
잡 이 익	28		0	
Ⅶ.영 업 외 비 용		247,700		692,880
이 자 비 용	75,740		0	
법 인 세 추 납 액	171,380		677,760	
잡 손 실	580		15,120	
Ⅷ. 법 인 세 차 감 전이익		43,181,485		881,960
IX.법 인 세 등		3,728,390		1,840
법 인 세 등	3,728,390		1,840	
X.당 기 순 이 익		39,453,095		880,12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당)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02월18일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03월 31일 제 3(전)기

처분확정일

회사명 :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71 4/5/21 71 6/7/21					
과 목	제 4(당)기		제 3(전)기		
7 3	금	액	금	액	
1. 미 처 분 이익잉여금		46,494,764		7,041,66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041,669		6,161,549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효과	0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이 익	39,453,095		880,120		
Ⅱ. 임 의 적 립 금 등 의이입액		0		0	
1.	0		0		
2.	0		0		
합 계		46,494,764		7,041,669	
Ⅲ.이 익 잉 여금처분액		5,219,232		0	
1. 이 익 준 비 금	0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금	569,232		0		
가. 현 금 배 당	569,232		0		
나. 주 식 배 당	0		0		
4. 사 업 확 장 적립금	0		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립금	0		0		
7. 법 정 적 립 금	4,650,000		0		
IV. 차 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1,275,532		7,041,669	

[※] 본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회사명 : 경기에 다시 업 중소 압 차 변			The thirty of			대	(년위 변	
잔 액	합 계	계 정 과 목				합계	잔 액	
101,576,113	920,340,668	유	동	자	산	818,764,555		
101,576,113	920,340,668	< 당	좌	자	산 >	818,764,555		
	1,696,500	현			금	1,696,500		
81,293,450	864,023,339	보	통	예	금	782,729,889		
20,282,663	28,521,233		수		금	8,238,570		
	4,096,125	선	급		금	4,096,125		
	20,376,481	부	가 세	대 급	금	20,376,481		
	38,990	선	납	세	금	38,990		
	1,588,000	전	도		금	1,588,000		
147,336,122	283,873,622	비	유 동	자	산	137,675,312	1,137,	812
100,000	100,000	< 투	자	자	산 >			
100,000	100,000	출	자		금			
146,236,122	282,773,622	< 유	형	자	산 >	137,675,312	1,137,	812
136,537,500	136,537,500	7	축		물			
		감	가 상 3	각 누기	예액	1,137,812	1,137,	,812
9,698,622	146,236,122	건	설 중	인 자	산	136,537,500		
1,000,000	1,000,000	< 기	타비수	구 동지)산 >			
1,000,000	1,000,000	임	차 보	증	금			
	1,230,877,617	유	동	부	쵀	1,284,587,276	53,709,	659
	152, 185, 513	외	상 매		금	162,853,997	10,668,	,484
	61,509,884	0	지	급	금	65,632,254	4,122,	,370
	9,410,210	예	수		금	44,624,950	35,214,	,740
	520,000,000	선	수		금	520,000,000		
	392,562,010		지 급	비	용	392,576,675	14,	,665
			지 급	법 인	세	3,689,400	3,689,	,400
	50,000,000	투	자 예	수	금	50,000,000		
	45,210,000	국	고 예	수	금	45,210,000		
	930,000	ᆈ	유 동	부	채	105,000,000	104,070,	
	930,000	장	기 차	입	금	55,000,000	54,070,	,000
		조	합 원	차 입	금	50,000,000	50,000,	,000
	700,000	자	본		금	44,200,000	43,500,	,000
	700,000	출	자		금	44,200,000	43,500,	,000
	53,536,433	이	익 잉	여	급	100,031,197	46,494,	764
	7,041,669	0	월 이 역			53,536,433	46,494,	764
	46,494,764	□ [처 분이	익잉이	ᅧ금	46,494,764		
	574,677,436	令			익	574,677,436		
	574,677,436	손			익	574,677,436		
	531,248,251	판	매 관	리	刷	531,248,251		
	127,611,510	즥	원	급	0‡	127,611,510		

합계잔액시산표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경기에너지현동조한

(단위 : 원)

회사명 : 경기에너지	니엽동소압 							(단위 : 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게성파국				합 계	잔	애	
	4,794,860	복	의 후	생	비	4,794,860			
	4,853,000	0‡ E	山 正	통	비	4,853,000			
	876,125	통	신		Н	876,125			
	10,330,780	세급	금 과	공 과	금	10,330,780			
	1,137,812	감 2	가 상	각	비	1,137,812			
	2,901,440	보	험		료	2,901,440			
	195,000	운	반		비	195,000			
	14,560,881	도	너 인	쇄	비	14,560,881			
	2,294,946	사	구 용	苦	Н	2,294,946			
	11,012,326	소	모	苦	비	11,012,326			
	31,479,128	지	급 수	수	료	31,479,128			
	10,005,453	광	고 선	전	비	10,005,453			
	1,978,070	건 딁	물 관	리	비	1,978,070			
	307,216,920	외 =	주 용	역	비	307,216,920			
	574,677,436	엉	겁 외	수	익	574,677,436			
	269,673	Ol	자	수	익	269,673			
	968,490	일 자	리인	ŀ 정지	H금	968,490			
	12,339,245	P	원		금	12,339,245			
	561,100,000	국 :	고 보	조	금	561,100,000			
	28	잡	0		익	28			
	247,700	영 역	걸 외	비	용	247,700			
	75,740	0[자	비	용	75,740			
	171,380	법	인 세	추 납	액	171,380			
	580	잡	손		실	580			
	3,728,390	법	શ	세	뜽	3,728,390			
	3,728,390	법	인	세	등	3,728,390			
248,912,235	4,174,837,553		함	계		4,174,837,553	24	8,912,235	

제 2호 의안 2021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의결주문 : 정관 제 34조 6항에 의거하여 시행한 202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사업감사보고서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귀중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은 탄소중립 2050에 발맞추어 경기도내 에너지협동조합 100개 설립 및 운영 지원, 광역과 기초의 에너지전환 정책 발굴 및 추진, 재생에너지 확산과 일자리 창출 사 업 발굴, 에너지협동조합의 생태계조성 등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21년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사업을 보면서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모색과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감사 의견과 제안을 첨부합니다.

2019년부터 5개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경기아트센터' 옥상의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호~3호기' 건립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의왕내손체육공원의 경기도민 4호기 발전소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사무국 안정화와 도민 참여 에너지전환을 실현해가시킬 바랍니다. 향후 민관의 협력으로 에너지원 및 부지 발굴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에너지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타 단체와의 연대 와 협력으로 자체발전소 설립 및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다각화를 통한 에너지전환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 부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활동으로 경기도 에너지전환의 플랫폼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겠습니다.

2022년 1월 30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감사 이치선

회계감사보고서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귀중

본 감사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기간에 대한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위 결산서에 대한 감사는 재무상태 및 수입과 지출 금액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대조 확인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위 결산서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기간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8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회계감사 박 준 배

제 3호 의안 잉여금 및 출자배당 지급의 건

의결주문: 정관 제 34조 5항에 의거하여 잉여금 및 출자배 당 지급의 건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잉여금 및 출자배당 지급의 건

2021년 잉여금 및 출자배당 예상(안)

○ 잉여금 및 당기순이익

전기미처분이익잉여금	7,041,669	원
2021년 당기순이익	39,453,095	원
합계	46,494,764	원

○ 배당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항목	금액	
법정적립금	4,650,000	원
배당금(4.2%)	569,232	원
공익사업비	-	원
총계	5,219,232	원

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41,275,532	원
--------------	------------	---

제 4호 의안 임원 충원 및 보임 이사회 위임의 건

의결주문: 정관 제 47조에 의거하여 임원 충원 및 보임을 이사회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2022년 임원 충원 및 보임에 관한 위임의건

2022년 임원 충원 및 보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사업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충원하거나 직책을 부여(보임)을 할 수 있도록, 의결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위임을 요청함.

제 5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주문: 정관 제 34조에 4항에 의거하여 2021년 사업계 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2022년 사업계획

경기에너지협동조합 2022년 사업 계획(안)

■ 설립 목표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를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
- 에너지협동조합의 사업 및 활동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 관리 활성화
- 에너지자립률 상승과 에너지 정의 실현 기반 구축

■ 올해 목표

- 1. 지역 신규협동조합 설립(10개소) 및 사업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 2.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제안
- 3.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사업다각화 협력사업 진행
- 4. 경기도민햇빛발전소 500kW 신규건립 및 시민참여형 발전소 건립 연대
- 5.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확충과 사무국 역량강화

■ 세부내용

1. 신규협동조합설립 및 활성화 사업

1) 에너지협동조합 신규설립

- 경기도 시군 에너지협동조합 미설립지역
- 에너지협동조합 10개소 설립 목표
-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설립 컨설팅을 통한 연계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의정부, 고양 협동조합 연대)

2)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협동조합 사업 관련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사업제안 및 활동내용

2.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 **사 업 명** : 그린뉴딜 인력 양성교육 <부제> 경기도민 에너지프로슈머 양성교육

□ 사업 목적

- O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교육으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에 너지프로슈머를 양성하여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 O 에너지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마을)의 에너지전환 활동 지원과 정책 제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의 근거 마련
- O 31개 시·군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형 에너지전환 추진
- O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로 업무의 협업 및 추진력 확보

□ 사업 대상 :

	주제	프로젝트명	사업대상	추진 활동	목표량(성과지표)
		에너지 <u>프로</u> 슈머	-경기도민 (31개 시·군민)	31개 시·군(민) 에너지전환 교육 (지역(마을), 시민단체, 학교 등)	·교육생수 300명 ·교육(2시간) 20회 ·교육동영상·유튜브
	<기리>	시민교육	-시민단체, 마을주민, 학교 등	녹색전환 활동가 양성	업로드 10건 ·에너지전환 활동가 전문역량강화 31명
그린부달양 생 (경기 민지 마루 양성) 육) 프로슈너 교육 (공기 민지 마루 양성) 육)	<그런> 녹색에너지 소비자(건슈 머)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에너지프 로슈머 녹색전환 활동	-지역(마을), -주제별모듬 (예: 조례, 지역에너지 계획, 전기요금체 계 등)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프로슈머 활동가 소모임 ·마을 공동체 교육 및 활동 ·에너지전환(절약+효율화+생산) 활동 -에너지전환 활성화 토대 마련 ·전기요금사회적대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조례 제(개)정 등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원 모색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에너지프로슈머 소모임 5그룹 ·에너지 관련 조례 제(개)정 3건
	<뉴달〉	마을모임, 협동조합 포함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시민발전소,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주민참여형협동조합 네트워킹 ·홍보용 소책자 -에너지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전력거래시장 ·에너지전환 활성화 등	·협동조합 설립 5개 ·홍보용소책자 제작 ·협동조합 네트워킹 발전소 설치 1,000kW(온실가스 연540톤 감축) ·탄소공감의날캠페인	
		조직 등	-우리마을 에너지원을 찾아서 ·재생에너지 부지 찾기 (경기도 · 시군 · 개인 소유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가능 부지 발굴 3건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 및 협력		Energy 다모여	민·관 협력	-도내 에너지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에너지전환 사업 다각화와 공동 사업 발굴 -총괄워크숍	도 전체 간담회 1회, 지역 간담회 1회

□ 추진 계획

경기도민 에너지프로슈머

그린

녹색에너지 소비자(컨슈머)

경기도민 에너지프로슈머 시민교육

○ 교육목표 :

- 경기도형 그린뉴딜 사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교육
- 경기도 에너지전환 부문별 교육 동영상 업로드로 개인 및 지역 역량강화 활용
- 에너지전환 활동가 대상 분야별 전문성을 키워가는 강사 양성

○ 추진배경:

-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재생에너지 수용성은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예: 태양광 및 반사, 전자파 등)
- 정부의 탄소중립 2050과 글로벌 기업의 RE100(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 너지로 생산) 선언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이제 환경의 문제를 넘어선 경제이고 생존의 문제임.
- 거시(나아가야할 방향)와 미시(당장해야 할 실천)를 바라보고 활동하는 경기도 전 문적인 에너지 활동가가 필요함.

○ 교육대상 :

- 시군(민), 시민단체, 마을, 학교 등
- 에너지전환 활동가

○ 기대효과 :

- 성인 또는 청소년 대상 주제별 연속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 산업 예측과 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으로 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의 기반 마련
- 에너지프로슈머 전문 활동가 양성으로 에너지전환을 홍보하고 확산하는 인적자원 확보
- 실천력을 겸비한 에너지프로슈머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 경기도형 그린뉴 딜의 성공적 실현에 기여

경기도민 에너지프로슈머

그린

녹색에너지 소비자(컨슈머)

경기도민 에너지프로슈머 녹색전환활동

○ 교육 & 활동 목표 :

- 에너지프로슈머 소모임 교육 및 활동 지원으로 지역(마을)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에너지전환 활성화
- 주민 주도 에너지 절약·효율화·생산 실천 활동 등 적극적 에너지프로슈머 활동
-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전기요금사회적대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조례 재(개)정 등)
- 지역(마을)에 적합한 에너지원 모색(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 추진배경:

- 양성된 에너지프로슈머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모 임을 활성화하고 지원하여 에너지전환운동의 뿌리를 내리고자 함.
- '긍정의 힘으로 일하라' 기후위기 시대의 급박함에 동감하고 활동하는 에너지프로 슈머와 함께 지역(마을)에서 에너지전환 활동을 추진함으로 지역의 촉매제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전환 사업 진행 시, 제도를 만들고 수정하는 상황으로 광역 및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개정 또는 제정하여 에너지전환의 근거를 만듦.

○ 교육 & 활동 대상 :

- 지역(마을), 학교, 기관 및 단체 대상 소모임 활동(시민교육 진행 후 지역 상황 고려 함)
- 주제별 지역(마을) 모듬 : 조례, 지역에너지계획, 전기요금 개편

○ 기대효과 :

-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벽을 허무는 것은 마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해야 하므로 에너지 전환·자립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마을) 만들기
- 지역의 전문능력을 갖춘 에너지프로슈머가 에너지전환 전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음.

경기도민 에너지프로슈머

그린

녹색에너지 생산(프로듀서)

에너지등대 협동조합

○ 사업목표:

- 31개 시·군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에너지전환 플랫폼 구축

단계	목표	지원 및 협력
1	설립	교육, 컨설팅
2	발전소 올리기	운영 및 실무 지원, 현장탐방, 컨설팅
3	함께하는 협동조합	워크숍, 교육, 간담회

(협동조합 설립, 소책자 제작, 지역(마을) 에너지원 찾기, 사업다각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컨설팅 지원)

- 경기도형 그린뉴딜·에너지전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기본 토대 구축 (1가구1발전소←에너지원 및 부지 발굴, 협동조합 발전소 설치 컨설팅)
- 에너지협동조합 네트워킹으로 사업다각화 및 공동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전력거래시장, 경기도민발전소 건립, 주민참여형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 네트 워킹)

○ 추진배경

-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31개 시군의 에너지전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설립과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원과 부지 발굴 및 타당성 조사로 재생에너지 확산
-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은 초입단계로 수용성이 낮고 진입 장벽은 높으며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 발전소를 올리기까지 정비되지 않은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하며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협력이 필요함.
 - · 공공부지 발굴⇒발전소 설치⇒전력 거래⇒조합원 배당금 및 펀드 이자 지급(도 민참여확대)
- 급변하는 세계정세(RE100, ESG 등)를 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필요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에너지협동조합 추진체 개인 및 단체

○ 기대효과

- 2021년 에너지원 및 부지발굴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화로 재생에 너지 보급 및 확산
-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2050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이행의 토대 마련
- 31개 시·군 1개 이상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으로 협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

탄소 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연계

Energy 다모여

○ 사업목표

- 31개 시·군 협동조합 간(경기도 전체, 권역별) 소통 및 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에너지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사업연계 및 협업, 공동 사업 발굴
- 사업 내용 추가제안 및 적절성 논의, 현장 애로 사항 확인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 추진배경 :

-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
- 에너지전환을 위한 각 사업의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흩어져 있는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하는 거버 넌스 체계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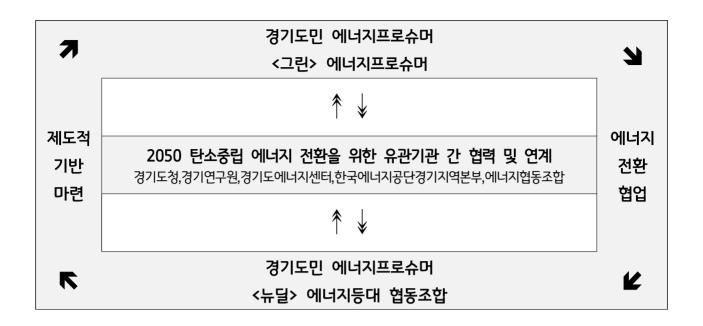
○ 사업대상 :

- 경기도청, 경기연구원, 경기도에너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에너지 협동조합

○ 기대효과

- 향후 에너지전환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유관 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검증하는 데이터 인 력 확보 중요
- 원스톱 서비스(태양광 설치에서 폐기(재활용)까지) 제안 등

○ 추진프로세스 :



□ 기대효과

- O 2018년부터 진행한 교육의 목적인 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에서 한발 더 나 아간 지역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으로 에너지전환 추진력 확보
- O 미래세대(청년층) 홍보로 기후위기 인식에서 실천 행동으로 나아가는 세대, 젊어진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성장
- O 유관기관 소통으로 현장과 행정의 괴리를 좁히고 기관 사업이 주민참여로 실행되어 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는 에너지전환 시스템 구성
- O 31개 시·군 에너지전환 플랫폼인 협동조합 활성화로 2050 탄소중립 사회 구현

3.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사업다각화 모색 및 사업 진행

1)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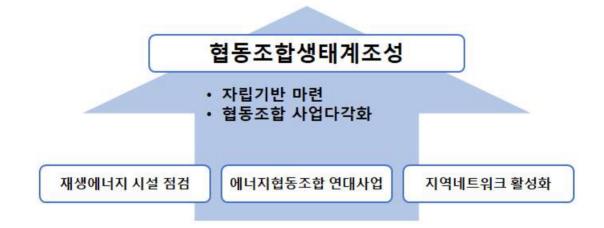
- □ 사업필요성(배경)
 - 지역내 발전시설 출장점검 및 설비확인(기존 찾아가는 에너지닥터사업)
 - 경기도내 자가용 태양광 효율성 제고로 안정적 발전량 확보 및 에너지 관련 정보 데이터화
 - 31개 시·군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 대상 교육으로 재생에너지 전문 기술 인력 양성(100명)
 - 에너지협동조합과 주민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강화로 에너지 생태계 조성 세부내용

□ 사업개요

사업 분야		사업 내용			
	<u></u> 수행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찾			
	전문인력	아가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양성교육 및	찾아가는	설비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유지관리방법 및 자가진단 방법			
네트워크 강화	교육	을 위한 기본교육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정보 제공			
	네트워크	경기도 내 협동조합 네트워크 강화로 공동사업 추진 및 사업			
	강화	다각화로 협동조합 자립 기반 구축			
	י אורון דו דו	경기도 지원으로 설치ㆍ가동 중인 태양광 시설 대해 설비			
실태점검 및	실태점검	의 유무, 철거, 이전, 소유자 변경 등 실태 점검			
사후관리	사후관리	현장 방문하여 설비 상태점검 및 사후관리			

□ 추진 기반

- 경기시민발전협의회와 협동조합 추진체



□ 사업목표

- 지역 내 에너지활성화로 지역에너지 자립역량 강화
- 경기도 내 재생에너지 민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및 신규설립
- 소유자(관리자) 교육으로 사후관리 및 일상점검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발전 량 확보
- 태양광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 및 추후 정책자료 활용

□ 사업추진방향

- 에너지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립기반마련
-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에너지전환 확대
- 경기도 내 협동조합 활성화 및 미설립 지역 설립 추진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교육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수용성 상승
- 재생에너지 시설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발전량 확보
- 데이터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 사업설계

4. 경기도민햇빛발전소 건립 및 시민참여형 발전소 건립 연대

1) 경기도민햇빛발전소 500kW 건립(자체발전소 건립사업)

-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을 위한 자체 발전소 건립
- 경기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공동 부지개발을 통해 발전소 건립
- 2022년 500kW건립을 목표로 조합원 증좌 및 출자금 확대

2) 경기시민햇빛발전소 건립 확대(지역조합과 연대사업)

- 시민참여형 경기도민 발전소 건립, 지역협동조합과 연대사업 진행
-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 지역협동조합과 연대하여 사업 기획
- 사업주체 간 MOU 체결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중심 사업으로 설계
- 경기도소유 공공부지에 경기도민발전소 건립 (인재개발원, 테크노파크, 킨텍스주차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 2021년 경기도 에너지원 및 부지발굴 공모 신청 대상 현장방문 사업타당성 조사

5.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확충, 사무국 역량 강화 사업

- 회의체계 정례화 및 사업 집행력 강화
- 이사회 격월 운영 정례화
- 사무국회의를 통한 운영 안정화
- 2022년 사무국 상근체계 마련 등 운영 내실화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인 전담 활동가 채용
- 2022년 조합원 확대
- 2021년 조합원 200명을 목표로 조합원 확대

2022년 예산(안)

□ 수입 지출안

2022 . 1. 1 ~ 2022. 12. 31

(단위: 천원)

항목	내역	2021년	면 예산	기타
	41 7		합 계	
매출	-		100,367	
전력생산사업	발전소(2기)전기생산	100,367		1·4호기 40,950 500kW 예정 (1/2년) 57,500
판매비와 관리비	-		605,038	
직원급여	직원급여	160,000		
퇴직연금	퇴직연금	10,000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4,800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4,900		
통신비	전화 문자,우편	900		
세금과공과금	법인,주민세,등록면허, 인허가	10,400		
운반비	운반비	200		
도서인쇄비		14,600		공모사업 520,000 포함
사무용품비	사무비	2,300		
소모품비	사무비	5,000		
지급수수료	회계법인 수수료 영업수수료 등	31,500		
광고선전비	사업홍보	10,000		
건물관리비	사무실	3,400		
인력보조비		300,000		
	집기비품	1,000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35,493		1·4호기발전소14,868 500kW 20,625(1/2년)
지급임차료	발전시설	1,566		1·4호기발전소 566 500kW 1,000(1/2년)
	고용,산재 등	3,000		
보험료	발전시설	1,975		1·4호기발전소 922 500kW 1,053(1/2년)
안전관리비	발전시설	4,004		1·4호기발전소 1,694 500kW 2,310(1/2년)
영업외수익	-		530,270	
이자수익	이자 수익	270		
후원금		10,000		
국고보조금		520,000		
영업외비용	-		11,469	
이자비용	대출이자	10,469		1·4호기발전소 이율 1.2 500kW(1/2년 1.2 & 1.5)
법인세추납액	법인세	1,000		
	통수익		630,637	
	통비용		616,507	
	손익		14,130	

■ 시설 투자 현황 및 계획

1) 현황

(단위: 원)

명칭(용량)	장소	설치자금	자금조성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호기(99.9kW)	경기아트센터 옥상	136,537,500	선도사업	41,100,000
			조합원차입금	50,000,000
			은행차입금	45,437,500

2) 계획

(단위: 원)

명칭	장소	설치자금	자금조성계획	
경기도민 4호기		176 002 000	자기자본	43,500.000
(의왕시민햇빛발전2호 기-99.9kW)	의왕내손체육공원	176,902,000 ((부가세포함)	조합원출자금	11,200,000
			은행차입금	122,202,000
경기도민 5호기	고고버기 바그	907,500,000	조합원출자금	272,250,000
(500kW)	공공부지 발굴	(부가세포함)	은행차입금	635,250,000

■ 자본 예산

(단위: 원)

하모	잔고	スコレロ	가 시 ㅂ	잔고
항목	2021.12.31.	증가분	감소분	2022.12.31.
출자금	43,500,000	283,450,000	10,000,000	316,950,000
법정적립금	0	4,650,000		4,650,000
이익잉여금	46,494,764	14,130,000	5,219,232	55,405,532
계	89,994,764	302,230,000	15,219,232	377,005,532

제 6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의 건

의결주문: 정관 제 34조에 4항에 의거하여 2022년 사업계획에 따른 조합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의 건

- □ 2022년 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한 차입
 - 차입금 현황 : 합 일억칠천팔백팔십삼만천원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호기	55,000,000	원
경기도민햇빛발전소 4호기(예정)	123,831,000	원
합계	178,831,000	원

- 차입예정금액
 - : 2,000,000,000 (금 이십억원)
- 사업계획에 따른 차입활용방안
 - 2022년 500kW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차입 예정
 - 아울러 경기도 및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동부지개발 사업으로 발전용량 큰 사업진행이 필요할 시 추가 차입 필요
 - 이에 따라 금 20억원으로 차입 한도 상향 요청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정관

(제정) 2018-01-25 (일부개정) 2021-03-30

제1장 총 칙

-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①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30.>② 조합은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기도 시·군 에너지협동조합의 결성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3.30.>
-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 한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조합원이 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는 전자 문서(전자 우편과 전화 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체 조합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조합의 필요에 따라개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파산한 경우
 -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총회출석, 교육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단, 제명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고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신설 2021.03.30.>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지분은 탈퇴 또는 제명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채무를 다 갚을 때 까지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하거나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제17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3회까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 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8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신설2021.03.30.>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 우편, 전자 문서, 전체 조합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통지 할 수 있다.
-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 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 ②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제21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 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4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 1. 조합의 시설이나 설비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 2.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 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27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 금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3.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최소 21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1.03.30.>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부 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정한다.
-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

- 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
-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
- 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3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 문서, 전체 조합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신설 2021.03.30.>
 -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5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한 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36조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3. 조합원의 제명
 -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신설 2021.03.30.>
 -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신설 2021.03.30.>
-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 【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39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의사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이나 전자 문서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62조 각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45조【운영위원회】** ①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제62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3.30.>

-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장, 상임임원, 근로자 대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2조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단.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임원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④ 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임한다.<신설 2021.03.30.>
- 제48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 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전 벽보의 부착
 - 2. 선거 공보의 배부
 -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후보자의 자격심사
 -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9. 당선인의 확정
 -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5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5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한다.
- 제57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

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합원의 중요 사항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 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 1. 정관, 규약, 규정
 - 2. 사업결산 보고서
 -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 4. 사업결과 보고서
-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1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위촉 할수 있다.
 -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추대당시의 이사의 임기와 같게 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62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
 - 2.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 3. 에너지, 환경, 협동조합 관련 교육과 홍보 및 컨설팅 사업
 -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5.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협동사업
 -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7.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에너지 및 친환경 상품의 판매사업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10. 기타 이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11.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신설 2021.03.30.]
 - 12.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신설 2021.03.30.]
 - 13. 전기공사업[신설 2021.03.30.]

- 14. 모든 전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신설 2021.03.30.]
- 15. 건축물전기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 16. 건축물전원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 17. 가공 대전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 18. 지중 대전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 19. 공장 자동화제어 설비공사업[신설 2021.03.30.]
- 20. 수배전 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 21. 기타 산업시설물 공사업[신설 2021.03.30.]
- 2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신설 2021.03.30.]
- 23.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신설 2021.03.30.]
- 24. 금속조립구조제 개발업[신설 2021.03.30.]
- 25. 금속조립구조제 도소매업[신설 2021.03.30.]
- 26. 금속조립 구조제 수·출입업[신설 2021.03.30.]
- 27.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신설 2021.03.30.]
- 28.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개발업[신설 2021.03.30.]
- 29.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도·소매업[신설 2021.03.30.]
- 30.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수출업[신설 2021.03.30.]
- 31.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신설 2021.03.30.]
- 32. LED 조명기구 제조업[신설 2021.03.30.]
- 33. LED 조명기구 도·소매업[신설 2021.03.30.]
- 34. LED 조명기구 개발업[신설 2021.03.30.]
- 35. LED 조명기 수출입업[신설 2021.03.30.]
- 36. 태양광 발전 장치 등 제조업[신설 2021.03.30.]
- 37. 태양광발전 장치 등 도소매업[신설 2021.03.30.]
- 38. 태양광발전 장치 등 수출입업[신설 2021.03.30.]
- 39. 태양광 접속 분전반 도소매업[신설 2021.03.30.]
- 40. 태양광 접속 분전반 수출입업[신설 2021.03.30.]
- 41. 태양광 접속 분전반 제조업[신설 2021.03.30.]
- 42. 태양광 전지 구조물 제조업[신설 2021.03.30.]
- 43. 태양광 전지 구조물 도소매업[신설 2021.03.30.]
- 44. 태양광 전지 구조물 수출입업[신설 2021.03.30.]
- 45.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업[신설 2021.03.30.]
- 46.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신설 2021.03.30.]
- 47.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사업 등 에너지 관련사업[신설 2021.03.30.]
- 48. 통신공사업[신설 2021.03.30.]
- 49. 전기자재 및 전기부품 유통도소매업[신설 2021.03.30.]
- 50.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유통 및 도소매업[신설 2021.03.30.]
- 51.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업[신설 2021.03.30.]
- 52.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관련 사업[신설 2021.03.30.]
- 53. 신재생에너지 사업[신설 2021.03.30.]
- 5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신설 2021.03.30.]
- 55.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업[신설 2021.03.30.]
- 56. 건설업[신설 2021.03.30.]
- 57.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대여사업[신설 2021.03.30.]

- 58. 환경관련사업 컨설팅[신설 2021.03.30.]
- 59. 부동산임대업[신설 2021.03.30.]
- 60. 나물재배, 버섯재배 등 농업[신설 2021.03.30.]
- 61. 녹색건축 건설, 관리운영 사업[신설 2021.03.30.]
- 62. 그린 리모델링 분야 사업[신설 2021.03.30.]
-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신설 2021.03.30.]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신설 2021.03.30.>
- 제63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03.30.>
 - 1.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제64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제66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67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8조 【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69조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5조 법정적립 제26조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 제27조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21.03.30.>
 -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 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사회적 기업 배당원칙에 따라, 잉여금의 발생 시 배당금 총액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 3.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1.03.30.]
-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조합은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할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72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제73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 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개정 2021.03.30.>
 -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개정 2021.03.30.>

부칙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수원시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명단

연번	조합원명	단체명/이름	지역	출자 좌수
1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박평수	고양	1
2	곽부현	거성교회	안산	1
3	비금햇빛발전협동조합	이종숙	남양주(비금)	1
4	양정필	경기도시공사	성남	1
5	남경완	달항아리예술단	광주	1
6	안인환	종교계	남양주	1
7	최중인		안양	1
8	김성욱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성남	1
9	시흥에너지㈜	천향숙	시흥	1
10	남기웅	한국에너지융합협회	서울	1
11	YWCA경기지역	박희경	안산	1
12	이상희	전)경기도의원	시흥	1
13	도윤석	전)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	1
14	안산YWCA	박희경	안산	1
15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산	1
16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수원	11
17	원불교안양교당		안양	1
18	강성주	전)하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남	1
19	박준배	공인회계사세무사박준배사무 소	수원	1
20	양기석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 장	수원	1
21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안산	10
22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	51
23	신동한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천	1
24	오창근	비금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비금)	1
25	평택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준호	평택	1
26	용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	1
27	김우현	오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	1

연번	조합원명	단체명/이름	지역	출자 좌수
28	수원YWCA	이귀선	수원	1
29	안양YWCA	이규숙	안양	1
30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의왕	1
31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안산	1
32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수원	1
33	고재경	경기연구원	서울	61
34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두만	의정부	1
35	부천YMCA	김기현	부천	1
36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송원근	서울	1
37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완우	이천	1
38	고양YWCA	이경애	고양	1
39	김인호	전)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 협동조합	수원	3
40	하용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안산	1
41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성길수	고양	1
42	최태량	공동의집에너지협동조합	수원	6
43	최인모	대부도협동조합	대부도	2
44	안은석	㈜베가스	안산	1
45	안재훈	에이랜드	안산	1
46	진종석		과천	1
47	윤재우	전)경기도의원	의왕	1
48	주)모담하우징케어	정사교	수원	1
49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수원	1
50	강해윤	원불교	안양	1
51	배병호	한강WEF특별위원회	양평	5
52	허기용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	1
53	김선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화성	11
54	정태정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수원	1
55	조은석	모두같이사회적협동조합	수원	1
56	김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원	1
57	이상열	남양주에너지협동조합	남양주	1
58	안창희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의정부	1

연번	조합원명	단체명/이름	지역	출자 좌수
59	권다예		수원	1
60	박희경	안산YWCA	안산	1
61	강철구	경기연구원	수원	1
62	박정순		울산	1
63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서울	1
64	정동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	11
65	김성희		강원도 횡성	1
66	김효진		강원도 횡성	1
67	안용수	㈜파라스	안산	1
68	이슬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	1
69	장재권		서울	1
70	조성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수원	2
71	정경임		용	1
72	서명석		수원	55
73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의왕	1
74	안병노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의왕	1
75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광명	1
76	임효심		화성	1
77	이재정		화성	1
78	이채은		화성	1
79	이승수		화성	1
80	이재열		화성	1
81	이유경		화성	1
82	이서행		화성	1
83	김미화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수원	1
84	김홍삼		용인	51
85	김예슬		용인	1
86	김민우		용인	1
87	박종석	수원희망샘 인문학기획단	수원	1
88	이지연	수원희망샘 인문학기획단	수원	1
89	김정한	수원희망샘 인문학기획단	화성	1
90	하혜정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	1
91	최학열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오산	1

92	김은경		안산	1
연번	조합원명	단체명/이름	지역	출자 좌수
93	이하늬		수원	35
94	정희자		김포	1
95	조은환	Ray America	김포	1
96	박종아		수원	1
97	허밝음		서울	1
98	김성연	수원희망샘인문학기획단	수원	1
99	노건형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	1
100	박용순		안산	1
101	김용호		수원	1
102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수원	1
103	오천석	수원희망샘 인문학기획단	수원	1
104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윤은상	수원	1
105	김광원		수원	2
106	이정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	1
107	디자인플랫폼협동조합	오소연	수원	2
108	김정욱	디자인플랫폼협동조합	수원	1
109	우성숙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시흥	15
110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남양주)	남양주	5
111	김혜숙		수원	2
112	황미정	광명시기후에너지센터	광명	3